

기업훈련 탄력운영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변경사항

구 분	기 존	변 경
II. 공모내용 4. 참여접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제출방법) 소재지 관할 공단 지부·지사에우편, 메일, 방문 제출 ※ 연내 행정지원시스템(HRD-NET)내 탄력운영제 관련기능 구축 후 전산화 예정 ○ (제출서류) [별첨] 1~3 기업훈련 탄력 운영제 참여기업 참여신청 서류 ※ 참여신청서, 성실 훈련 서약서, 훈련계획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제출방법) 행정지원시스템(HRD-NET)을 통해 훈련계획서 전산 신청 ※ 참여 전, 고용24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에서 훈련기관 회원가입 및 행정지원 이용승인 후 탄력운영제 참여 신청 가능 ○ (제출서류) [별첨] 1~3 참여신청서, 성실훈련서약서, 훈련계획서 ※ 행정지원시스템(HRD-NET) 신청 시 자동 탑재되어있으므로 파일 별도 작성 및 제출 불요
III. 세부운영기준 1. 훈련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훈련유형) 자체훈련 또는 자체+위탁훈련 ○ (훈련방법) 집체훈련, 비대면 쌍방향 훈련 ○ (지원대상 훈련과정) 승인받은 훈련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훈련시간) 최소 1시간, 다만 신기술 훈련은 4시간 이상 권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훈련유형) 자체훈련 또는 자체+위탁훈련(기업가치플러스훈련 가능) ○ (훈련방법) 집체훈련, 비대면 쌍방향 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단, 기업가치플러스훈련으로는 집체훈련만 가능 ○ (지원대상 훈련과정) 승인받은 훈련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훈련시간) 최소 1시간
III. 세부운영기준 2. 지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훈련비) 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」에 따라 훈련비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만, 신기술(29개 분야) 훈련시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300%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훈련비) 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」에 따라 훈련비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만, 신기술(29개 분야) 훈련 시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300%까지 지원